감 정 평 가 서

Appraisal Report

건 명 : 이창재 소유물건(2026타경11098)

의 뢰 인 : 제주지방법원 경매10계
사법보좌관 손병현

감정서번호 : TOR26-A0730-01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더오름감정평가사사무소

TEL. 064)758-0691 FAX. 064)758-0692

한국감정평가사협회

TOR26-A0730-01

(선박) 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 정 평 가 사

김필호 (인)

감정평가액	일억이천오백삼십사만오천구십원정 (₩125,345,090.-)			
의 뢰 인	제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손병현	감정평가 목적	법원경매	
제 출 처	제주지방법원 경매10계	기 준 가 치	시장가치	
소 유 자 (대상업체명)	이창재 (2026타경11098)	감정평가조건	-	
물건목록 표시근거	귀 제시목록 등	기 준 시 점	조 사 기 간	작 성 일
기 타 참고사항	-	2026. 08. 11	2026. 08. 03 ~ 2026. 08. 11	2026. 08. 12

평가내용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 정 평 가 액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단 가	금 액
선박	1척	선박	1척	-	45,345,090
제시외 어업허가권	(1식)	제시외 어업허가권	1식	-	80,000,000
	이	하	여	백	
합 계					₩125,345,09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Ⅰ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대상물건은 연안복합어업 등을 위해 1995년 02월 15일에 진수된 어선(영남호, 총톤수 : 3.43톤)으로서, 제주지방법원 경매10계에서 의뢰된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임.

2. 대상물건(선박)의 개요

구분			내 역
선박명칭			영남호
선박번호			9502012-6491302
선적항			서귀포시
선박의 유형 및 용도			어선(연안복합어업, 연안자망어업, 연안들망어업)
조업구역			제주특별자치도 연안 일원
조선소			어란조선공업(주)
진수연월일			1995년 02월 15일
<선체>	총 톤수		3.43 톤
	주요치수 (M)	길이	9.34
		너비	2.76
		깊이	0.81
<기관>	기관의 종류		선박용 디젤기관
	실마력/회전수		320 PS / 2,000 RPM
	제조자		두산인프라코어
	제조일자		2018년 10월 12일

3. 감정평가 기준 및 근거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에 관한 실무기준」 등 감정평가관계법규와 감정평가 이론에 근거하여 감정평가하였음.

4. 기준가치

가. 개 요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음.

나.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기준가치”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로서,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는 “시장가치”, 즉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價額)을 기준으로 하되, 감정평가 목적(경매)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5. 감정평가 조건에 대한 검토

없 음.

6.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가. 감정평가 관련 규정의 검토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①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②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 할 수 있다.

③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 할 수 있다.

④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 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 할 수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 [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0조 [자동차 등의 감정평가]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선박을 감정평가할 때에 선체·기관·의장(艤裝)별로 구분하여 감정평가하되, 각각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⑤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 할 수 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감정평가실무기준 630.3.3 [선박의 감정평가방법]

① 선박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선체·기관·의장별로 구분하여 감정평가하되, 각각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선박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선체는 총 톤수, 기관은 엔진 출력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선박의 감가수정은 선체·기관·의장별로 정률법을 적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정도·관리상태·수리여부 등을 고려하여 관찰감가 등으로 조정하거나 다른 방법에 따라 감가수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가수정을 하는 경우 「수산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별표10]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선박으로서 효용가치가 없는 것은 해체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감정평가실무기준 630.1.3 [기계기구류의 감정평가방법]

① 기계기구를 감정평가 할 때에는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물건과 현상·성능 등이 비슷한 동종물건의 적절한 거래사례를 통해 시중시가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외국으로부터의 도입기계기구류를 포함한다)에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 할 수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6조 [그 밖의 물건의 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4조부터 제25조까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대상물건을 감정평가 할 때 이와 비슷한 물건이나 권리 등의 경우에 준하여 감정평가 해야 한다.

나. 대상물건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1) 대상물건은 선박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3항에 따라 동종 유사 선박의 선체 신조가격, 기관 및 의장품의 구조, 규격, 형식, 용량 및 현상 등을 참작한 선체, 기관별 원가법으로 감정평가 하되, 유사 선박의 거래사례 포착의 어려움 및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과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주된 방법으로 산정(算定)한 시산가액(試算價額)의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였음.

2) "원가법"은 기준시점에서 선체 · 기관 · 의장품별로 재조달원가를 산출하고, 이를 감가수정(減價修正)하여 대상물건인 선박이 갖는 현재의 가격, 즉 원가를 구하는 방법을 말하며, 이 방법은 상각자산(선박, 건물, 기계기구류, 구축물 등)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현실로서는 선박감정평가에 가장 적합한 방법임.

3) "어업허가권"은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나 어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조업의 경우 수익자료 포착이 용이하지 않고, 조업상황에 따라 수익성 차이가 많은 반면 어업허가권의 가치가 어업의 종류와 톤수에 따라 일정하게 형성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방매사례, 호가수준 및 유사 평가사례를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였으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거 유사물건 거래 자료의 포착이나 수익환원법의 적용이 어려운 점 등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여 주된 방법에 대한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였음.

다. 일괄 · 구분 · 부분감정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이유 및 내용

없 음.

7.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하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하여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6년 08월 11일을 기준시점으로 정함.

8.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그 내용

실지조사는 대상물건이 있는 곳에서 대상물건의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대상물건의 확인)에 따르면,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대상물건은 2026년 08월 03일부터 2026년 08월 11일까지 현장실사를 통해 실지조사를 실시하였음.

9. 그 밖의 사항

가. 본건 선박의 종류, 선적항, 어선번호, 총톤수, 기관 등은 귀 제시목록, 어선원부, 채권기관에서 제공받은 선박서류(선적증서, 어업허가내역서, 어선검사증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주지사에서 열람한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는바 경매 진행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나. 본건 선박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및 서홍동 소재 '서귀포항'에 정박중인 선박을 실사하였음.

다. 본건 선박의 일부 의장품(의장품 일련번호 2~5)은 선박에서 탈거 후 물품보관업체(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소재 ㈜세경)에 보관중인 바, 물품보관업체에서 실사 후 감정평가하였음.

라. 본건 선박은 어선검사증서(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주지사에서 열람)상 어선검사유효기간은 2026년 02월 09일부터 2031년 02월 08일까지임.

마. 본건 선박의 정상 운항여부, 주기관, 보조기관 및 의장품 등의 정상작동상태 등은 확인이 불가능하여 귀 제시목록, 어선원부 및 내·외부관찰 등에 의하여 통상적인 작동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바. 본건 선박의 기관은 명판 확인이 되지 않아 제조일자 등이 불분명하여 평가전례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주지사에서 열람하여 확인되어진 제조자, 제조일자 등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였음.

사. 본건 선박의 의장품은 별도 목록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현장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는 의장품을 기준으로 목록작성 하였으며, 일부 의장품은 선체 및 기관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면서 부속적인 성격을 가지는 점을 고려하여 선체 또는 기관에 포함하여 일괄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소유관계 및 일괄경매 여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람.

아. 본건 선박에 설치 및 탈거된 의장품 등은 현상 및 관리상태에 의거 원가법으로 평가하되,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였음.

자. 본건 선박(어선)의 어업허가권은 별도로 감정평가 하였으며, 「수산업법」 제45조 제1항에서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을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매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임차한 자는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어업허가의 승계여부를 감정인이 확인, 확정할 수 없으니 경매진행시 승계여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Ⅱ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1. 감정평가방법

가. 산출개요

대상물건은 선박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3항에 따라 동종 유사 선박의 선체 신조가격, 기관 및 의장품의 구조, 규격, 형식, 용량 및 현상 등을 참작한 선체, 기관별 원가법으로 감정평가 하였으며, "원가법"은 기준시점에서 선체·기관·의장품별로 재조달원가를 산출하고, 이를 감가수정(減價修正)하여 대상물건인 선박이 갖는 현재의 가격, 즉 원가를 구하는 방법임.

적 산 가 액	≒	재조달원가	-	감가수정액

2. 재조달원가

가. 어선의 신조단가(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발간 선박감정평가(2023-01-01기준))

1) 선체(연안허가 어선)

구분	선질	건조원가	비고
1톤 미만	FRP	1,400만원	선주옵션제외
1톤 ~ 3톤급		1,400만원 ~ 4,800만원	
3톤 ~ 9.77톤급		4,800만원 ~ 26,000만원	
9.77톤 ~ 20톤급		26,000만원 ~ 55,000만원	

2) 업종에 따른 가중치

구분	선질	가중치 부여	비고
채낚기	FRP	기준 대비 20 ~ 30% 상향	구체적 옵션에 따라 차등 적용
자망		기준금액과 유사	
안강망		기준금액과 유사	
통발		기준 대비 10 ~ 20% 상향	

3) 주기관과 보조기관의 유형별 PS당 단가

구분		단가(PS 당)	
주기관	Marine Diesel Engine	고속	147,000 ~ 275,000원
		중, 저속	367,750원 이하
보조기관	Marine Diesel Engine	국산고속	88,000 ~ 184,000원
		외산 중, 고속	169,000 ~ 250,000원

※ 축계, 감속계 Generator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 기관의 가격

나. 재조달원가의 결정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발간한 「선박감정평가자료집」의 건조원가 및 국내·외에 소재한 조선업체의 자료, 유사 동종 선박의 평가 및 매매사례 등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

일련번호	선명	구분	재조달원가	비고
1	영남호	선체	2,500만원/톤	배전반 등 기타 부대시설 포함
		기관	165,000원/PS	감속기 등 기타 부대시설 포함
		의장품	-	'선박 의장품 감정평가명세표' 참조

3. 내용년수 및 잔존가치율

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발간 선박감정평가(2023-01-01기준)

용도	선종별	내용년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율
어선	강선	25년	정률법	10%
	경금속선	16년	정률법	10%
	합성수지선(F.R.P)	15년	정률법	10%
	목선	12년	정액법	10%

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발간 유형고정자산 내용연수 자료집(2024년)

주요 유형	세부 유형		내용년수	비고
선박	어선	강선	20 ~ 25년	-
		알루미늄선, FRP선	15 ~ 20년	-
		목선	10 ~ 15년	-

다. 수산업법 시행령[별표 10]

용도	선종별	내용년수	잔존가치율
어선	강선	25년	20%
	FRP선	20년	10%
	목선	15년	10%

라. 내용년수의 결정

본건 선박은 FRP 어선으로서, 실제 대부분 FRP 어선의 경우 20~25년 정도를 내용년수로 보고 있으며, 실제 경제적내용년수와 경제적 가치의 형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아래와 같이 내용년수와 잔가율을 결정하였음.

선종	구분	내용년수	잔존가치율
FRP 동력선	선체	25년	10%
	기관	20년	10%
	의장품	15년 등	10%

4. 감가수정

가. 감가수정의 개요

감가수정은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 기능적감가,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서 공제하여 기준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격을 적정화하는 과정을 말하며, 그 방법에는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이 있으나, 선박의 경우 초기에 감가액이 크고 점차 감가액이 작아지는 특성을 지니는 기계류의 감가와 유사한바, 대상 물건의 매년 말 가격에 일정한 감가율을 곱하여 매년의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인 정률법을 적용하되, 선체 기관 등의 관리상태를 고려하여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였음..

감가수정액 = 재조달원가 × [1-(1 - 잔존가치율)^{n}] *n: 경과년수

나. 잔가율의 산정

일련번호	선명	구분	내용년수	최종 잔가율	경과년수		잔존년수	잔존 가치율	진수년월 (제작년월)
					실제	유효			
1	영남호	선체	25	0.1	31	20	5	0.1585	1995.02.25
		기관	20	0.1	7	7	13	0.4467	2018.10.12

5. 선체, 기관 및 의장의 감정평가액 결정

가. 적용단가의 산정

구분	규격	재조달원가	잔존가치율	적용단가(원)
선체	3.43톤	25,000,000	0.1585	3,963,000
기관	320PS	165,000	0.4467	74,000

나. 감정평가액의 결정

구분	규격	단가(원)	감정평가액(원)	비고
선체	3.43톤	3,963,000	13,593,090	-
기관	320PS	74,000	23,680,000	-
의장품	별지 참조	-	8,072,000	조타기 등

6. 어업허가권 평가금액

대상선박의 허가권 평가액은 어업의 조업 실적에 따라 가격의 변동이 크게 나타나는바, 수익환원법의 적용이 사실상 곤란한 점과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주된 어업종류의 허가권을 기준으로 통상적인 톤 단위의 방매 및 호가 수준을 참고하여 산정하였음.

선박명 (어선번호)	어업의 종류	허가번호	톤수	어업허가권 평가액
영남호 (9502012-6491302)	연안복합어업	서귀 연안복합어업 제2024-00182호	3.43	80,000,000원
	연안자망어업	서귀 연안자망어업 제2024-00051호		
	연안들망어업	서귀 연안들망어업 제2024-00072호		

Ⅲ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의견

대상 선박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구조·용도·사용자재·시공정도·부대설비 상태 등을 기초로 한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減價修正)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주된 감정평가방법인 "원가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으며,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주된 평가방법인 "원가법" 외에 다른 감정평가방법(거래사례비교법이나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를 통한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였음.

일련번호	선명	구분	적재용량, 수량	적용단가	감정평가액(원)	비 고
1	영남호	선체	3.43톤	3,963,000	13,593,090	상세내역은 "감정평가 명세표" 참조
		기관	320PS	74,000	23,680,000	
		의장품	10점	-	8,072,000	
		어업허가권	1식	-	80,000,000	
		합 계			**125,345,090**	-

TOR26-A0730-01

(선박)감정평가명세표

선박명칭	영남호	선박번호	9502012-6491302	선 적 항	서귀포시

구 분	적재용량 및 수량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단 가	금 액	
선 체	3.43 G/T	3,963,000	13,593,090	25,000,000 × 0.1585 (5/25) 관찰감가
기 관	320 HP	74,000	23,680,000	165,000 × 0.4467 (13/20)
보조기관	-	-	-	
의 장 품	10 점	-	8,072,000	선박의장품 감정평가 명세표 참조
합 계			₩45,345,090.-	잔가율(선체:10%, 기관:10%)

선 박 의 내 용

선체	종 류	동력선	선 형	-		척 도	
	용 도	어선(연안복합어업 외)	총 톤 수	3.43 G/T	길이 :	9.34 M	
	등 급	-	순 톤 수	- N/T	너비 :	2.76 M	
	선 질	FRP	적화톤수	- DWT	깊이 :	0.81 M	
	선 창	-	조 선 소	어란조선공업(주)	비 고		
	객 실	-	건조년월일	-	배전반 등 기타 부대시설 포함.		
	승무원실	-					
	조 선 지	-	진수년월일	1995-02-15			
기관	종 류	DIESEL ENGINE	기 통 수	6 CYL	제 작 소		
	실 마 력	320 PS	회 전 수	2000 RPM	두산인프라코어		
	공칭마력	- HP	기 통 경	123 m/m	제조일자 및 번호		
	형 식	MD196TI	행 정	155 m/m	2018-10-12		
	속 력	- Knots	보조기계 및 기관의종류와 수량		비 고		
	추진기의 종류 및 수 량	나선일체식 추진기1기	-		감속기, 추진기 등 기타 부대시설 일체포함.		

TOR26-A0730-01

(선박의장품)감정평가명세표

일련번호	명칭 * 종류 구조*규격 형식*용량	제 작 자 제 작 번 호 제 작 일 자	수량	감정평가액		비 고
				단 가	금 액	
1	자동조타기 SAS-7 #3604671 - 기타 부대시설 일체 포함	SAMYUNG ENC 2013.06	1식	-	476,000	3,500,000 ×0.1359 (2/15)
2	GPS플로터 HGP-4800MK2 #001492 10.4인치 - 기타 부대시설 일체 포함	HAIYANG 2008.10	1식	-	448,000	관찰감가 3,300,000 ×0.1359 (2/15)
3	레이다 MRD-99 #09904199 - 기타 부대시설 일체 포함	KODEN 2010.06	1식	-	448,000	관찰감가 3,300,000 ×0.1359 (2/15)
4	송수신장치 IC-M424G #21007671 - 기타 부대시설 일체 포함	iCOM 미상	1식	-	342,000	관찰감가 1,000,000 ×0.3415 (8/15)
5	무선송수신장치 SS-2710A #5214 - 기타 부대시설 일체 포함	SHIN-A 1993.12	1식	-	136,000	관찰감가 1,000,000 ×0.1359 (2/15)
6	해상용네비게이션 GMT EYENAVI #DP13301125 - 기타 부대시설 일체 포함	(주)지엠티 2014.06	1식	-	190,000	1,200,000 ×0.1585 (3/15)
7	자동로라 닻용,유압식 - 기타 부대시설 일체 포함	국산 미상	1식	-	2,220,000	관찰감가 6,500,000 ×0.3415 (8/15)

(선박의장품)감정평가명세표

일련번호	명칭 * 종류 구조*규격 형식*용량	제 작 자 제 작 번 호 제 작 일 자	수량	감정평가액		비 고
				단 가	금 액	
8	발전기 미상 - 기타 부대시설 일체 포함	미상	1식	-	1,007,000	관찰감가 8,000,000 ×0.1259 (2/20)
9	집어시설 8조 - 안정기 및 기타 부대시설 일체 포함	국산 미상	1식	-	1,268,000	관찰감가 8,000,000 ×0.1585 (2/10)
10	3단 양승기 - 기타 부대시설 일체 포함	국산 미상	1식	-	1,537,000	관찰감가 4,500,000 ×0.3415 (8/15)
	합 계				**₩8,072,000.-**	
	이	하	여	백		

TOR26-A0730-01

(어업허가권)감정평가명세표

일련번호	어업권의 표시	어장의 면적		평 가 가 액		비 고
		공부	사정	단 가	금 액	
1	[사용어선] 어선의명칭 : 영남호 어선번호 : 9502012-6491302 기관의종류 : 선박용 디젤 320마력 총톤수 : 3.43톤 선질 : FRP [주어업] 어업의종류 : 연안복합어업 허가번호 : 서귀 연안복합어업 제2024-00182호 조업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연안 일원 어업의 시기 : 01.01 ~ 12.31 허가기간 : 2024.01.01 ~ 2028.12.31 포획, 채취물의 종류 : 은갈치,옥돔,돔류,방어류, 조기류,오징어류,문어류 [그외의 어업] 어업의종류 : 연안자망어업 허가번호 : 서귀 연안자망어업 제2024-00051호 조업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연안 일원 어업의 시기 : 01.01 ~ 12.31 허가기간 : 2024.01.01 ~ 2028.12.31 포획, 채취물의 종류 : 능성어류, 볼락류 [그외의 어업] 어업의 종류 : 연안들망어업 허가번호 : 서귀 연안들망어업 제2024-00072호 조업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연안 일원 어업의 시기 : 01.01 ~ 12.31 허가기간 : 2024.01.01 ~ 2028.12.31 포획, 채취물의 종류 : 자리돔, 멸치류, 쥐치류	1식	1식	-	80,000,000	
합 계					**₩80,000,000.-**	
이	하	여	백			

선박 감정평가요항표

(1) 선체의 현황 (2) 기관의 현황 (3) 의장품의 현황
(4) 운항사항 (5) 실사장소 (6) 기타 참고사항

(1) 선체의현황

본건은 어란조선공업(주)에서 1995년 02월 15일에 3.43톤급 FRP선박으로 진수되었으며, 년식 대비 선박 상태는 보통시됨.

(2) 기관의 현황

본건에 설치된 주기관은 320PS X 2,000RPM 두산인프라코어 선박용 디젤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주지사에서 열람)으로 구체적인 제원을 알 수 있는 제원표시가 없고, 작동여부는 알 수 없음.

(3) 의장품의현황

본건에 설치된 의장품은 운항 및 조업에 필요한 시설물로 제 현상 및 관리상태는 무난시되나, 작동여부는 알 수 없음.

(4) 운항사항

본건 선박의 조업구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연안 일원임.

(5) 실사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항에 정박중인 상태에서 승선하여 현장조사 하였음.

(6) 기타 참고사항

1) 의장품 일련번호(2)~(5)는 탈거되어 '제주시 애월읍 광령평화10길 225-1(주)세경'에 보관중이고, 현장조사 하였음.

선박 감정평가요항표

(1) 선체의 현황	(2) 기관의 현황	(3) 의장품의 현황
(4) 운항사항	(5) 실사장소	(6) 기타 참고사항

2) 어선검사유효기간 : 2026.02.09 ~ 2031.02.08(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주지사에서 열람) 임.

3) 어업허가기간 : 2024.01.01 ~ 2028.12.31 임.

한국감정평가사협회

TOR26-A0730-01

광 역 위 치 도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항 정박



[범 례] ■ 본 건 ■ 표준지 ■ 평가사례 ■ 거래사례

위 치 도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항 정박



TOR26-A0730-01

사 진 용 지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01 영남호 전경



02 영남호 후면 전경



03 선박번호



04 갑판 전경

사 진 용 지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05 조타실 전경



06 조타실 내부 전경



07 조타실 내부 전경



08 주기관

사 진 용 지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09 (의장품1)자동조타기



10 (의장품2)GPS플로터



11 (의장품3)레이다



12 (의장품4)송수신장치

사 진 용 지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13 (의장품5)무선송수신장치



14 (의장품6)해상용네비게이션



15 (의장품7)자동로라



16 (의장품8)발전기

사 진 용 지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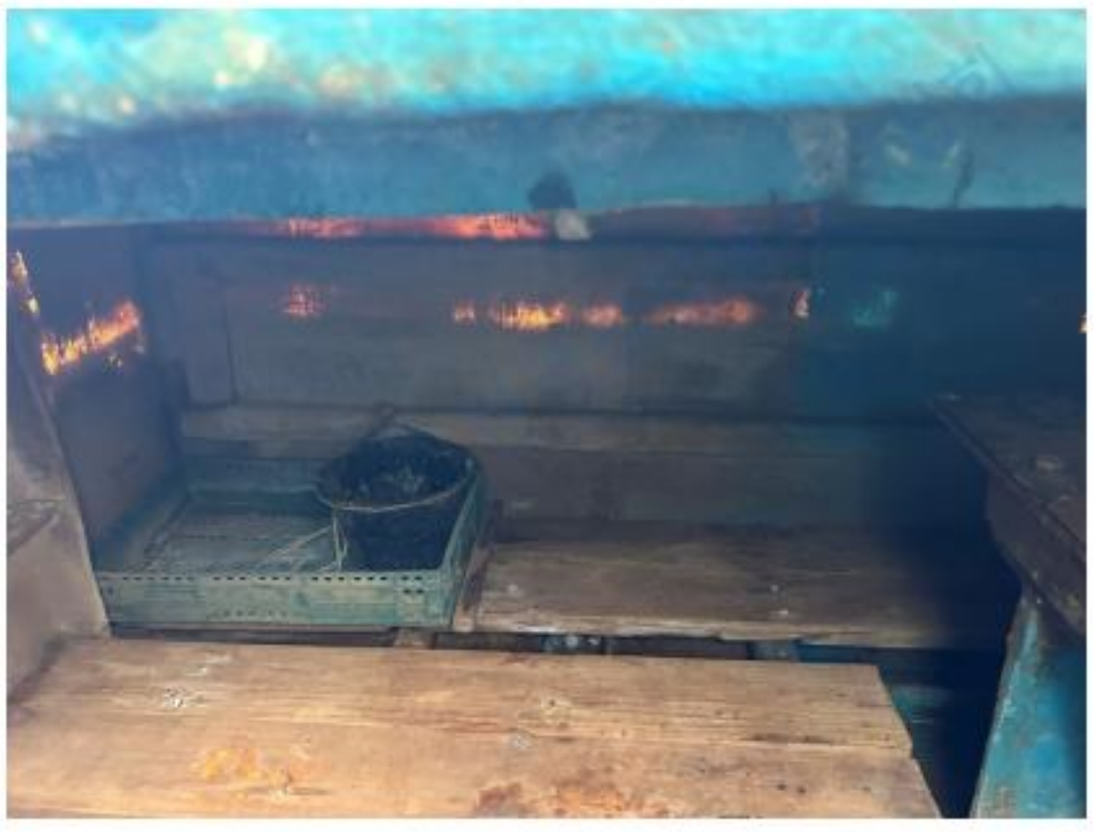
17 (의장품9)집어시설



18 (의장품9)집어시설



19 (의장품10)3단 양승기



20 어창